

---

# 2020년 (사) 5·18서울기념사업회 정기총회

---

- 일시: 2020년 1월 18일(토) 16시
- 장소: (사) 5·18서울기념사업회 교육장

(03147)서울시 종로구 율곡로56, 7층(운현하늘빌딩)

TEL 02-774-5518      FAX 02-774-5519

E-mail : [518seoul@hanmail.net](mailto:518seoul@hanmail.net)

[www.518seoul.org](http://www.518seoul.org)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The May18 Seoul Memorial Society)

---

# 식 순

---

- |                                   |           |
|-----------------------------------|-----------|
|                                   | 사 회- 김용만  |
| 1. 성원보고                           | 상임이사- 김인환 |
| 2. 개회선언                           | 회 장- 최병진  |
| 3. 국민의례                           | 사 회- 김용만  |
| 4. 회장인사                           | 회 장- 최병진  |
| 5. 보고사항                           |           |
| ■ 2019년도 감사보고                     | 감 사- 장신환  |
| 6. 의안심의                           | 회 장- 최병진  |
| ■ 제1호. 정관개정의 건                    |           |
| ■ 제2호. 2019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           |
| ■ 제3호. 2020년도 사업(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
| ■ 제4호. 기타 안건                      |           |
| ■ 제5호. 2020년 임원선출의 건              | 선거관리위원회   |
| 7. 감사장 전달식                        | 사 회- 김용만  |
| 8.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사 회- 김용만  |
| 9. 폐회선언                           | 회 장- 최병진  |
| 10. 광 고                           | 사 회- 김용만  |

---

## 4. 회장 인사말

---

### < (사) 5·18서울기념사업회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4년에 걸친 5·18서울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칩니다.

제 임기 동안 2017년 7월, 회원동지님들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으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동년 9월 사단법인 5·18서울기념사업회가 공식적인 출범을 하였고, 12월에 바로 이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보람을 누린 저는 행운아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8일 오늘,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길고 버거웠던 소임을 내려 놓게 되어 회원동지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18서울기념사업회 대표로서 회원동지들에게 반드시 감사와 경의를 드려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19년 2월 11일부터 321일 동안 국회 앞 천막농성을 함께한 동지들에게 오늘 총회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이종명·김순례와 범법자인 지만원은 ‘중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 ‘북한군이 개입한 광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 등 피 흘려 민주화를 일궈낸 5·18민주화운동과 현대사를 폄훼하고 민주화의 주역인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범죄적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일 서울기념사업회 회원과 광주에서 올라온 동지들은 국회 망언 공청회에 쳐들어가서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손피켓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지들은 강제로 공청회장 밖으로 끌려나오고, 저는 그들에 의해 땅바닥에 쓰러져 얼굴과 목이 짓밟히고 안경이 산산조각 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 마디로 5.18역사가 처참하게 짓이겨지는 현상이었습니다.

2월 11일, 서울과 광주의 동지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을 치고 5·18역사왜곡 처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냉기 싸늘한 차가운 바닥에서 떨며 하룻밤을 보내야 했던 첫날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SNS를 통해서 천막농성이 알려지자 동지들이 참여를 하고 또 물질적 후원을 보내왔으며, 많은 동지들이 직접 농성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차가운 겨울에 시작한 농성이 무더운 여름을 거치고 또 다시 겨울이 되어 321일 동안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해본 농성인지라 많은 어려움이 닦쳐왔지만 농성

단 회원동지들은 뽄뽄 뭉쳐서 슬기롭게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동지들의 정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역사의 발전은 현장투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동지들이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지들의 천막농성투쟁을 통해서 5·18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5.18진상조사위를 통해 5.18역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우리 앞에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부정축재재산환수특별법 제정, 전두환 구속 수사 등이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오늘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본회가 추진한 사업과 결산, 올해의 사업(안)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5·18민중항쟁 4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하여 40주년 행사를 조속히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회원동지들과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올해의 행사는 범국민적 참여로 이끄는 행사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9주년에도 주장해온 것으로 예컨대, 전야제의 경우 광주와 서울 시청광장(또는 광화문)의 이원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여러분!

오늘은 제가 본회 대표로서의 임기를 마치는 날입니다.

본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회원동지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념사업회가 앞으로는 사단법인으로서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모든 회원동지들의 변화된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참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회원동지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무난히 임기를 마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庚子年 한 해에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월 18일

(사) 5·18서울기념사업회 회장 최병진

---

## 5. 보고 사항

---

### ■ 2019년도 감사보고

---

주문사항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시행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해 주십시오.


##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의 정관 제33조 및 제반 규칙에 의거하여 2019.01.01.부터 2019.12.31.로 종결되는 2019년도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의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문서와 장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결산서의 각 항목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 처리는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기타 의견

1.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따라 후원모집에 노력을 기울여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유함.
2. 지출관리가 전액 통장과 카드로만 결제되어 투명하게 잘 관리된 사항으로 판단됨

2020. 01. 14 .

감 사 : 장 신 환  (서명)

감 사 : 최 수 동  (서명)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귀중

## 6. 의안 심의

보고-김인환/진행-최병진

- 제1호. 정관개정의 건
- 제2호. 2019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 제3호. 2020년도 사업(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 기타 안건
- 제5호. 2020년 임원선출의 건

### ■ 제1호. 정관개정의 건

<주문사항>

정관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정관개정에 관한 친구대비표를 제출하오니 승인해주십시오.

#### ( )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정관 주문 친구대비표(안)

현행	변경(안)
<b>제1조(명칭)</b>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	<b>제1조(명칭)</b> 이 법인의 명칭은 "(사)5.18서울기념사업회" (이하 "본회" )라 한다.(약칭과 영문은 부칙에 둔다.)
<b>제2장 회 원</b> 제5조(회원의 자격)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지방청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서 본회에 가입신청을 한 자 2. 후원회원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아니나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을 한 자	<b>제2장 회 원</b> 제5조(회원의 자격)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지방청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서 본회에 가입신청과 등록을 마친 자. 2. 일반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신청과 등록을 마친 자.
<b>제6조(회원의 권리)</b>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각급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후원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총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	<b>제6조(회원의 권리)</b>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각급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총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공발을 권리	3. 정회원과 일반회원은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b>제7조(회원의 의무)</b>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5.18민주유공자로서의 품위유지	<b>제7조(회원의 의무)</b>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5.18민주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b>제13조(임원의 직무)</b>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b>제13조(임원의 직무)</b>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7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제2호. 2019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주문사항>

정관 제21조 와 제32조에 의거하여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를 제출하오니 승인 해주십시오.

### 1. 2019년도 사업보고

지역	행사명	기간(일자)/장소/주최	비고
서울	5.18민중항쟁 제39주년 기념 추도식	5.17/서울광장/(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5.18민중항쟁 제39주년 기념 기념식	5.18/서울광장/(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5.18민중항쟁 제39주년 기념청소년대회-골든벨	5.18/서울광장/(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수도권 중고학생 및 청소년 302팀,604명 참석
	5.18민중항쟁 제39주년 영화제	5.18/서울시청 다목적홀/(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택시운전사'상영
		5.18/서울광장/(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다큐'반성'상영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5.11~5.30/광주망월묘지 등/(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5.18서울기념사업회/5.18부상자회서울지부/꿈틀 오딧세이 학교 3개 단체운영	

5·18기념 전시회	5.17~19(3일간)/서울광장/(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5.3~30(28일간)/서대문형무소 제10옥사/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5·18민주 화운동기록관	
5·18역사왜곡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2.11~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농성장/ 농성단	
연대활동1	5.15/서강대 김의기광장/김의기기념사업회 창단식	서울사업회/농 성단참여
연대활동2	독두서점의 오월 출판기념회	
연대활동3	오월걸상 제막식	참여
연대활동4	민주열사 공동추모제	공동주최

## 2019년 (사)5·18서울기념사업회 사업내용 정리

### ■ 2019년도 세부사업 평가

#### (1) 5·18민중항쟁 제39주년기념 서울행사

##### ○ 기념식: 2019년 5월 18일 10시(서울시청 광장)

- 5·18민중항쟁 제39주년기념서울행사 행사위원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 기념사: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원이,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지방보훈청장 오진영

- 추도사: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부영

- 항쟁사: (사)5·18서울기념사업회 회장 최병진

- 고문: 강만길, 권오현, 김상근, 김종철, 김중배, 박중기, 백기완, 백낙청, 서중석, 송철원, 안병욱, 유인태, 이부영, 이이화, 이철, 이해동, 이해학, 임동원, 임헌영, 장남수, 정동익, 조순덕, 지선, 한승헌, 한완상, 함세웅

##### ○ 전국의 5·18전: 2019년 5월 3일 10시~ 30일 17시(서대문형무소 제10옥사)

- 다큐사진 40점, 박종화 캘리그래피 30점 전시

##### ○ 전시: 2019년 5월 17일 9시 설치~5월 19일 14시 철수

- 다큐사진 40점, 1980~1997년 총 20장의 연대기 및 깃발 20개 전시

##### ○ 골든벨: 2019년 5월 18일 11시~13시

- 184팀 368명(중:140명, 고등:228명) 참석, 대상 신동현, 김진희 조 외 7팀 수상
- 특별상 20팀



○ 5·18사적지 순례: 2019년 5월 11일(토)~5월 30일(목)(광주민주묘지, 오월길)

- 슬로건: “넘어~ 너머~”

- 1차:(사)5·18서울기념사업회 유공자(1박2일) 50명 참석

2차:(사)5·18부상자회 서울지부 및 민주인사(1박2일) 80명 참석

3차:오딧세이, 꿈틀학교(2박3일) 40명 참석

○ 5·18영화제: 2019년 5월 18일(토) (서울광장/서울시청 다목적홀)

- 반성(2019) : 이정국 감독(서울광장)

- 택시운전사(2018) : 서울시청다목적홀

## (2) 5.18역사왜곡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 발단: 2.8 지만원 초청 국회공청회(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김진태,이종명 주최. 김순례, 이완영, 백승주 발언. 지만원 발표.

○ 농성 : 2.11~12.28(321일간)

- 참가단체 : 5·18서울기념사업회, 5·18민중항쟁구속자동지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 서울지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5공청산국민연대, 재경호남향우회, 재경 광주전남청년회 외 민주시민들

○ 5·18행동의 날 : 4.4~12.16 총 37차

4.4 학살주범 전두환[제1차] / 4.11 영등포경찰서[제2차] / 4.18 정호용[제3차] / 4.25 장세동[제4차] / 5.2 허삼수[제5차] / 5.9 서울중앙지검[제6차] / 5.16 허화평[제7차] / 5.21 도청앞 집단사살 39주기에 다시 전두환[제8차] / 5.30 최세창[제9차] / 6.5 단합대회[제10차] / 6.13 지만원 사무실[제11차] / 6.20 신우식[제12차] / 6.27 최용[제13차] / 7.4 이희성[제14차] / 7.11 전두환[제15차] / 7.18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제16차] / 7.25 더불어민주당[제17차] / 8.1 김순례[제18차] / 8.8 서울중앙지법 지만원 재판[제19차] / 8.15 일본대사관[제20차] / 8.22 김진태[제21차] / 8.29 농성 200일 맞이 특별기자회견[제22차] / 9.4 이소선어머니 추모제[제23차] / 9.19 이종명[제24차] / 9.26 노태우[제25차] / 10.3 손가락행동[제26차] 10.10 손가락행동[제27차] / 10.16 부마항쟁 40주년기념식[제28차] / 10.26 박정희 및 이토 히로부미 사살 기념일 촛불집회[제29차] / 10.31 5·18진상규명법 개정안통과 성명[제30차] / 11.9 검찰개혁 서초동 연합촛불[제31차] / 11.12 전두환 골프 규탄[제32차] / 11.23 검찰개혁 서초동 연합촛불[제33차] / 11.30 검찰개혁 여의도 연합촛불[제34차] / 12.5 농성 300일 맞이 성명서 발표[제35차] / 12.10 (사)한국인권교육원 인권상 수상[제36차] / 12.16 국회 정론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제37차]

---

## 2. 2019년도 결산보고

---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결재			

\*별지1 참조

---

## ■ 제2호. 2020년도 사업(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주문사항>

정관 제21조, 제31조에 의거하여 2020년 사업계획(안) 및 결산(안)를 제출하오니 승인해주십시오.

---

### 1. 2020년도 사업(안)

---

#### ■ 2020년 사업목표 : 항쟁 40주년 기념 및 차세대 준비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선양사업을 위한 5.18민중항쟁 제40주년서울기념식 개최
- 5·18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가치 공유를 위한 청소년 5·18 골든벨 및 문예공모전 개최
- 5·18민주사적지 순례
- 5·18기념 문화행사
- 5·18민중항쟁 40주년 서울행사위 서울시와 협력 진행
-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를 광주행사위와 협력 주제 일관성 유지
- 5·18서울기념사업회에 분과별 운영위 설치 운영
-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청산리대첩 100주년 및 4·19혁명 60주년 기념) 적극참여
- 5·18진상규명조사위 활동 협조, 5·18왜곡처벌법, 신군부재산환수특별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음해하는 반민주세력에 공동대처하는 사업
- 5·18정신을 계승할 차세대 조직의 건설 및 서기사 활동 참여 독려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확산하도록 일반회원 입회 확대
- 5·18서울기념사업회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후원회 및 CMS 후원회원 확대

## ■ 2020년 세부사업계획

### (1) 5·18민중항쟁 제40주년기념 기념식

#### □ 목적

- 5·18민주화운동 기념, 선양
- 5·18민주영령 추모 및 정신 계승

#### □ 개요

- 부제: (광주행사위 미정)
- 일시: 2020. 5. 18(월) 10:00 ~ 11:00
- 장소: 서울광장
- 주최: (사)5·18서울기념사업회
- 주관: 5·18민중항쟁 제40주년기념 서울행사위원회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참여인원: 10,000여 명

#### □ 프로그램

- 개식(10:00)→ 국민의례→ 대표헌화, 분향→ 항쟁사 보고 및 기념선언→ 기념사 → 추모사→ 유공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기념공연 →명예위원장 마무리인사말→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만세삼창

#### □ 추진일정

- 2019년 12월 사업안 이사회 심의 및 승인
- 2020년 1월 사업계획 총회 심의 및 승인
- 2020년 1월 행사위원회(서울시 협력) 구성 및 사업진행
- 2020년 3~4월 홍보 및 마케팅
- 2020년 5월 행사 개최
- 2020년 7월 평가
- 2020년 12월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2) 5·18민중항쟁 제40주년 기념 제16회 서울청소년대회

### □ 목적

○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5·18민주화운동정신’ (독재와 불의에 대한 항쟁,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 나눔·평등·평화통일의 지향)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는다.

### □ 골든벨 개요

- 일시: 2020. 5. 18(토) 11:00 ~ 13:00
- 장소: 서울광장
- 주최: (사)5·18서울기념사업회
- 주관: 5·18민중항쟁 제40주년기념 서울행사위원회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참여인원: 1,000여 명

### □ 프로그램

○ 개회(11:00) → 예선 → 본선 → 부활전 → 골든벨 순위전 → 시상 및 기념촬영 → 폐회(14:00)

### □ 추진일정

- 2019년 12월 사업안 이사회 심의 및 승인
- 2020년 1월 사업계획 총회 심의 및 승인
- 2020년 2월 행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진행
- 2020년 3~4월 공문발송 및 홍보, 접수
- 2020년 5월 행사 개최
- 2020년 7월 평가
- 2020년 12월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 문예공모전 개요

- 작품공모기간: 2020. 4. 13(월)~24(금)
- 심사: 예심 및 결심,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교사
- 부문: 글, 그림, 사진, 동영상
- 주최: (사)5·18서울기념사업회
- 주관: 5·18민중항쟁 제40주년기념 서울행사위원회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참여인원: 1,000여 명

□ 진행일정

- 공모 홍보(3.2~4.24)→ 작품 접수(4.13~24)→ 예심(4.25)→ 본심(5.2)→ 발표(5.11)  
→ 전시(5.15~18)→ 시상 및 기념촬영(5.18)

□ 추진일정

- 2019년 12월 사업안 이사회 심의 및 승인
- 2020년 1월 사업계획 총회 심의 및 승인
- 2020년 2월 행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진행
- 2020년 3~4월 공문발송 및 홍보, 접수
- 2020년 5월 행사 개최
- 2020년 7월 평가
- 2020년 12월 정산 및 보고서 제출

**(3) 5.18민주사적지 순례-“넘어~너머~”**

□ 목적

- 80년 5·18민중항쟁의 역사적 현장을 유공자 및 민주시민단체, 청소년, 대학생들과 함께 방문하여 그 당시의 5·18항쟁정신을 재무장하고 미래의 방향성과 확장성을 도모함.

□ 개요

- 일시: 2020. 5월 중
- 장소: 서울<->광주 1박 2일
- 참여인원: 100여 명

□ 프로그램

- (사)5·18서울기념사업회, 5·18부상자회 서울지부, 기타 민주시민단체(학생단체) 3그룹으로 3회에 걸쳐 진행.

□ 추진일정

- 2019년 12월 사업안 이사회 심의 및 승인
- 2020년 1월 사업계획 총회 심의 및 승인
- 2020년 2월 행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진행
- 2020년 3~4월 홍보 및 접수
- 2020년 5월 행사 개최
- 2020년 7월 평가
- 2020년 12월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4) 5.18기념 문화행사

##### □ 목적

- 40주년을 기념하여 5월 민중항쟁 당대의 상황과 우리, 오늘, 여기의 현실을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로 구성하여 항쟁의 의미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 5월 민중항쟁을 직접 겪었던 부모세대와 2020년 현실의 삶을 꾸리고 있는 자녀세대가 함께 관람하여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과 소통의 장 구현.

##### □ 개요

- 일시: 2019. 연중
- 장소: 서울광장
- 참여인원: 20,000여 명

##### □ 프로그램

- 전시회 ○ 도서전 ○ 모의재판 ○ 학술대회
- 음악회 ○ 영화제 ○ 4대 종단 추모 의례

##### □ 추진일정

- 2019년 12월 사업안 이사회 심의 및 승인
- 2020년 1월 사업계획 총회 심의 및 승인
- 2020년 2월 작품 구성 및 기획
- 2020년 3~4월 홍보 및 마케팅
- 2020년 5월 행사 개최
- 2020년 7월 평가
- 2020년 12월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5) 2020년 5·18민중항쟁 40주년 서울행사위 사업참여

- 2020년에는 광주시와 서울시가 전국광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40주년 기념행사 준비
- 40주년 서울행사를 위해 서울시와 광주시가 MOU 협약 맺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행사위 별도 구성. 본회가 고문단, 자문단, 집행위원 추천함.
- 본회의 계속 행사와 서울시 주도 서울행사위와 협력하여 기념행사 진행.
- 광주행사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일관된 주제로 기념행사 진행.

## **(6) 5·18진상규명 협조 및 관련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

- 5·18진상규명법 개정에 따른 조사위 출범으로 본격 조사 개시 예정. 본회는 수도권외 양심고백 및 증언 접수 등 진상규명 활동에 최대한 협조
- 5·18왜곡처벌법과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재산환수특별법은 21대 국회 개원(6월) 이후 진행해야 할 사항. 5·18농성단의 핵심이 서기사였던 만큼 향후 활동도 서기사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갈 것임.
- 출마자 및 당선자 상대로 5·18왜곡처벌법과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재산환수특별법 제정 협조 여부 여론조사 등 압박 가능.

## **(7) 5·18서울기념사업회에 분과별 운영위 설치 운영**

- 5·18서울기념사업회에 분과별 운영위를 설치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념사업을 도모하려고 함.
- 홍보 및 언론 담당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을 운영

## **(8)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 5·18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
- 해외 5·18유공자단체(미주, 유럽 등), 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 유가족협의회, 흥사단, 4·19혁명회, 4·19공로자회, 제주4·3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연대함

## **(9)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

- 봉오동전투, 청산리대첩 100주년 기념사업 및 4·19혁명 60주년, 전태일 분신 5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

## **(10)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음해하는 반민주세력에 공동대처하는 사업**

- 지만원 등 극우세력들이 5·18정신을 왜곡 폄훼하지 못하도록 국회공청회, 민사형사 사건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함.
- 5·18기념재단, 5·18전국협의회, 5·18기록관, 5·18구속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

## 2. 2020년도 예산(안)

---

\*별지2 참조

---

## ■ 제4호. 기타안건

---

- 1) 2020년도 사무처 운영방안
  - 2020년 사무운영비 마련 문제
  - 사무처 간사 채용 건
  - 정관개정 등기용 임원 필수서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제출
  
- 2) 구속부상자회 관련 향후 서기사의 지향점 모색
  
- 3) 후원회 공동회장으로 윤남식 추천
  
- 4) 고문 추대 : 임왕택 이사, 한용상 이사
  
- 5) 오월결상 설치 : 4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일천만원 이내 지원 이사회 결의
  
- 6) 기소유예 및 구금자에 대한 보상 관련 설명 : 법무법인 해마루

---

## 7. 감사장 전달식

---

- 2019년 321일 장기농성 공로 및 기여자

---

9.

---

---

## 9. 폐회선언 및 공지

---

- 총회 종료후 신년회 장소 : 궁궐가는길 찌개집(본 회관 우측 건물 지하)

## 8.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입을 위한 행진곡

사 랑 도 명 예 도 이 름 도 남 김 없 이  
 동 지 는 간 데 없 고 깃 - 발 만 나 부 껴

5 한 편 생 나 가 자 - 던 뜨 거 운 - 맹 - 세  
 새 날 이 을 때 까 - 지 혼 들 리 - 지 말 자

9 세 월 은 훌 리 가 도 산 친 은 안 다

13 께 어 나 서 외 치 는 뜨 거 운 함 성

17 앞 - 서 서 나 가 니 산 - 자 여 파 르 라

21 앞 - 서 서 나 가 니 산 자 여 파 르 라

3

#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정관

2017. 7. 8.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선양하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및 추모사업
2. 올바른 민주의식 함양과 5·18정신계승을 위한 청소년 역사 교육 사업
3.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사업
4.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
5.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음해하는 반민주세력에 공동대처하는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지방청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서 본회에 가입신청을 한 자
2. 후원회원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아니나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을 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각급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후원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총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4. 5·18민주유공자로서의 품위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제9조(포상과 징계)**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회원권 정지(정권)

3. 제명

④ 3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3호의 징계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이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5. 상임이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제 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임기 만료로 인한 새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임원 개선과 관련하여 본회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재적 임원의 3분의2 이상을 한꺼번에 개선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직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나 궐위되었을 경우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 의결에 따른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에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전·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내 총회소집이 불가능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된 총회에서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임원이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본회 사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해임 또는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 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감사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에서 위임한 내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재적이사 과반수의 합의로 부의하는 안건
14. 감사가 부의하는 안건
1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고문 및 지도 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 및 지도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 제 6 장 재 정

**제29조(수입금)**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하여야 한다.



## 제 7 장 사무부서

- 제35조(사무부서)** ①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8 장 보 칙

- 제36조(법인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37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규칙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본회는 5·18서울기념사업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7년 7월 8일

발기인(대표)최병진 (인)    발기인 김명자 (인)    발기인 최수동 (인)  
발기인 장신환 (인)    발기인 최영선 (인)    발기인 김청식 (인)  
발기인 정찬우 (인)

#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 정관(개정안)

---

2017. 07. 08. 제정

2020. 01. 18.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5·18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  
(약칭과 영문은 부칙에 둔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선양하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및 추모사업
2. 올바른 민주의식 함양과 5·18정신계승을 위한 청소년 역사 교육 사업
3.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사업
4.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
5.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음해하는 반민주세력에 공동대처하는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지방청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서 본회에 가입 신청과 등록을 마친 자

2. 일반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신청과 등록을 마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각급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총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정회원과 일반회원은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5.18민주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제9조(포상과 징계)**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회원권 정지(정권)
3. 제명

④ 3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3호의 징계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이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5. 상임이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제 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임기 만료로 인한 새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⑤ 임원 개선과 관련하여 본회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재직 임원의 3분의2 이상을 한꺼번에 개선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7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직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나 궐위되었을 경우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에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내 총회소집이 불가능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된 총회에서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임원이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본회 사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해임 또는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 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감사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에서 위임한 내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재적이사 과반수의 합의로 부의하는 안건
14. 감사가 부의하는 안건
1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고문 및 지도 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에 의해 고문 및 지도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 제 6 장 재 정

제29조(수입금)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하여야 한다.

## 제 7 장 사무부서

제35조 (사무부서) ①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8 장 보 칙

제36조(법인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7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칙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회는 5·18서울기념사업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0년 1월 18일